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1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4
1. 제정안의 구성	4
2. 법안 취지 및 배경	5
3. 검토의견	9
4. 관계기관 의견	12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4
1.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 · 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14
2.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 · 분석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22
3. 부칙	32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1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2. 12.
- (3) 회 부 일 : 2026. 2. 19.

나.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 체계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하여, 개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과거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 독립적인 조사 체계가 절실함. 이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

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청·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라.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 분석,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8조).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구성

□ 제정안은 전체 6장, 본칙 38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조사·분석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의결) 제7조(의사의 공개)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사무국의 설치)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6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조사 및 청문회 제19조(조사의 개시) 제20조(조사의 방법) 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제22조(청문회의 실시) 제2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25조(증인 등의 선서) 제26조(증인 등의 보호) 제27조(검증) 제4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행 점검 제28조(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29조(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제5장 보칙 제3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1조(비밀준수의무)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제3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35조(운송비·여비 등) 제3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2. 법안 취지 및 배경

□ 제정안은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응급실 뽕뽕이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응급실 뽕뽕이’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는 데 있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수용 지연 및 재이송 현상을 지칭함.

- 제정안은 ‘응급실 뽕뽕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거부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응급의료 제공 지연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안 제2조제4호),

통상적인 ‘응급실 뽕뽕이’ 개념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 것으로 보임.

□ 응급실 뽕뽕이 또는 그로 인한 환자 피해 현황에 대한 관계부처 등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산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를 명확히 특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다만, 119구급대의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연간 전체 이송 건수(1,807,486명) 중 10분 이내 이송이 46.3%(837,759명)를 차지하나, 병원 이송에 30분이 초과된 경우도 9.6%(172,955명)를 차지하며, 그 중 1.5%(26,529명)은 환자가 60분을 초과하여 병원에 이송됨¹⁾.

- 연간 재이송 환자 수는 7,486명이며, 그 중 Pre-KTAS 레벨1(심정지·중증외상 등 최종응급환자) 분류 환자의 재이송률은 571명(7.6%)을 차지함²⁾.

□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또는 전문의료인력·병상 부족이 거론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동 문제를 이와 같은 각각의 핵심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응급의료 전반의 대응체계 및 인프라 약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함.
- 한편, 119구급대는 환자 이송 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여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코로나19 시기에 격리 병상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으로 변하여 운영되었고, 2024년 이후 의료대란 상황에서 고착되었다는 지적도 있음³⁾.

1) 2024년 기준(소방청, 2025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2025. 6.)

2) 2024년 기준(소방청, 2025년도 119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2025. 9.)

3) 국회입법조사처,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25. 9. 8.

□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논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⁴⁾』(2023. 3.),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⁵⁾(2023. 5.~),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⁶⁾(2023. 6.~) 등을 통하여, 응급실 미수용 개선, 중증응급 수술·시술 보상 강화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왔음.

최근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를 구성(2025. 10)하여, 일명 ‘응급실 뽕뽕이’ 문제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응급환자 이송 지연·미수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하여,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간) 예정으로 실시하였음⁷⁾.

-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핵심과제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6)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2023. 5.) 구체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

7)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26. 2. 2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하 같음.

- 시범사업 진행지역(3개 광역 지자체):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 우선수용병원 지정·운용(안):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함⁸⁾.

8) 단, 최중증응급환자(심정지 등)는 사전 약속된 지침에 따라 곧바로 이송

3. 검토의견

□ 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하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원인 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의 대응 등 과정의 적정성 조사,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안 제4조)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사회적 피해를 규명하고 구조적인 원인 분석 및 관계부처·응급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환자 안전의 보장 또는 피해 구제와 관련된 현행법으로는 「환자안전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법률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사고⁹⁾’ 또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피해¹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정안과 같은 ‘응급의료기관 수용 거부나 이송 지연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9) 「환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의료법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1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제정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가 선정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하는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이는 제정안의 발의시기(2026. 2.) 기준으로 최근 약 5개연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특정한 사건·재난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 법률¹¹⁾의 경우 해당 사건·재난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비교적 용이한 반면, 응급실 뽕뽕이사건의 경우 그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거나 심화되어 제정안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관계부처·기관, 의료계 등의 의견 수렴 및 현황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명과 법안의 내용에서 ‘응급실 뽕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용어가 언론보도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수용 지연 및 재이송 현상을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드러낸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1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다만, ‘응급실 뽕뽕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제도적 문제보다 개별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뽕뽕이’라는 용어의 구어적 의미와 표준어로서의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어¹²⁾ 법률용어로서는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¹³⁾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

12) ‘뽕뽕’의 경우 “일정한 좁은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 “요리조리 자꾸 돌아다니는 모양”의 뜻을 지니나, ‘뽕뽕이’는 “숫자가 적힌 둥근 판이 돌아가는 동안 화살 같은 것으로 맞춰 그 등급을 정하는 기구. 또는 그런 노름”의 뜻을 지니고 있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13)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

제3조(법률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기본 원칙) ②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4. 관계기관 의견

기관명	주요 의견
보건복지부	범부처로 응급실 미수용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신중검토 필요 -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달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대책의 효과성을 확인하며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응급의료법」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등 현행법 내에서도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응급의료법」 제13조의7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윤의원안, 제2213901호)」의 논의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③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 2.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격차 및 이송·수용·전원 체계 분석 3.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환자의 이용 실태 및 의료 접근성 평가 4.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관련 시설·장비 등의 공급 및 활용 실태 5. 그 밖에 응급의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의 현재 기능과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활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건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임위원 직급(정무직)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17조) 관련, 파견은 기관 범위 밖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인사제도로써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해야 하므로,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규정 삭제 필요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실 수용 지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과 개선 노력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문제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필수의료 인프라 약화의 결과임. 따라서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적 조사가 아니라, 법 시행 이후 발생사건을 중심으로 구조적 지표 분석, 전향적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방향의 제정안의 신중한 보완 논의 필요 - 과거 사건 분석이 불가피하다면, 2021년 1월 1일이라는 임의적 시기가 아니라 응급의료 관련 주요 정책 변화, 인력 구조 변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객관적 제도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에 10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현직 근무 의사 2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규정 필요

기관명	주요 의견
대한병원 협회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응급의료 종사자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 의료인력 위축·이탈 등 응급의료 환경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에 반대함. - 응급실 뺑뺑이라는 용어는 문제의 원인을 병원의 수용 거부로 단순화하고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부적절 -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뺑뺑이의 핵심원인 분석 등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분석은 실효성 문제 발생 - 조사·청문회,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하고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우려 - 진행 중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후 응급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타당
대한의사 협회	법안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실패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강력반대 - 법안은 고발, 출국금지 요청, 청문회,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여,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는 입법취지와 모순됨. -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환자 사망의 책임주체로 전제하여 부적절 - 과도한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위원회의 조사대상 선정의 자의성,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및 중립성, 위원회에 대한 준수사기관 수준의 강제조사권 부여, 형벌 중심 접근에 따른 응급의료 위축 등 문제 - 수집정보가 민·형사 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비처벌적 조사체계,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 분석 및 인프라 확충 목적의 현장 전문가 중심의 대안적 기구 설치가 필요
한국환자 단체연합회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실 뽕뽕이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3조), 동 위원회에 사무국을 둬(제14조).
-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원인 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의 대응 등 과정의 적정성 조사,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함(안 제4조).

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응급실 뽕뽕이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2.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원인 조사 및 분석
3.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4. 응급실 뽕뽕이 예방·근절을 위한 응급의료 제공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7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긴급구조·응급의료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⑦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발생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사망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호), 선정의 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¹⁴⁾.

그러나 위원회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자가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또는 출국금지·정지 요청의 대상이 되거나(안 제21조15)), 법 위반에 따라 형벌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안 제37조·제38조16))을 감안할 때,

-
- 14) 제정안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8조).
- 15) **안 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6) **안 제37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
2. 제20조제7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망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2.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안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정보의 조회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 선정에 있어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관련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서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
을 규정하고,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에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하게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제4조제2항제1호)가 있는 반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
으로 대상을 한정한 입법례(「아동복지법」 제29조의9제1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입법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
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
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려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④ (생략)

□ 다음으로, 제정안은 조사대상자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그런데 위원회의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측에도 위원의 기피신청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자측(유족) 또한 조사대상자와 같이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입법례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제정안은 위원회의 직원이 형의 ‘확정’,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신분보장을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8조17)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공무원 직원 임면에 대한 규정 등¹⁸⁾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안 제15조제1항의 “형의 확정”을 “형의 선고”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위원회 직원의 신분조치 사유로 형의 ‘확정’을 규정한 입법례(「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1조제1항)와 형의 ‘선고’를 규정한 입법례(「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가 혼재하고 있음.

< 입법례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7)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함(안 제14조제4항).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 활동 존속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2.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는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 자료·물건 제출 요구, 사실·정보 조회, 출입 및 실지조사, 감정인 지정 및 감정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안 제20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

제 정 안
제19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조사개시 결정을 위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에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정보 조회

5.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학대 현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받은 개인·기관·시설·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시설·단체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사망자 유족(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청문회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위원회에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 자료·물건 제출 요구, 사실·정보 조회, 출입 및 실지조사, 고발 및 수사의뢰, 출국 금지·정지 요청, 청문회 실시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등의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¹⁹⁾.

< 입법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19) 다만, 「세월호진상규명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경우 위원회에 동행명령(「세월호진상규명법」 제27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9조)이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세월호진상규명법」 제30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32조) 권한이 있는 등 제정안상의 위원회의 권한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음.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

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9항 신설 2026. 2. 10.> [시행일: 2026. 5. 11.]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1항), 사망자측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직권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특정한 사건·재난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직권 외에도 해당 사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측의 신청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그와 같은 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사망자측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위원회가 인지하지 못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조사·분석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입법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조사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제정안은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또는 조사의 실시 여부를 정함에 있어 사망자측의 의사를 청취하거나, 사망자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선정 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망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같은 개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환자의 건강정보, 진료기록, 이송장소 및 사망경위 등의 민감정보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임으로, 사건 선정이나 조사 실시 여부를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사망자측의 의사를 청취 또는 반영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20) 참고로, 제정안은 결과보고서·백서를 발간함에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의 비공개(안 제28조제3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준수(안 제31조), 사망자·조사대상자 등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의 보호(안 제34조제1항), 안 제31조 또는 안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안 제3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이들 규정은 사건 선정 및 조사가 개시된 이후의 사망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0조제1항제5호²¹⁾에 오기된 단어(“아동학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정안과 무관한 용어로 보이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안 제28조(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③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사망자,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안 제31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그 밖에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3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사망자·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안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학대 현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3. 부칙

-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 필요한 조직의 설치,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의 제·개정’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함(부칙 안 제2조²²⁾).
- 그런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조제2항·제3항²³⁾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의 제·개정안 등을 입안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처장에게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하위법령 제·개정안의 심사를 요청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
- 또한 입법례에서도 통상적으로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통령령의 제·개정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의 제·개정을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22) 부칙 안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의 제·개정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3)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입법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09